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45
----------	-------

발의연월일 : 2025. 6. 2.

발 의 자 : 차규근 · 김현정 · 신장식
김준형 · 황운하 · 강경숙
김재원 · 김선민 · 서왕진
정춘생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및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들 역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 경영 감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영향

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하고자 함 (안 제147조제1항 및 제1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후단 중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를 “발행인의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를 “행사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을 “중대한 영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 제150조제1항·제3항, 제167조제3항”을 “제145조, 제16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

발

발
행인의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
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
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① -----

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4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중대한 영향-----

③ -----없다.

<u>명할 수 있다.</u>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u>제145조, 제150조제1항·제</u> <u>3항, 제167조제3항</u> 또는 제16	26. <u>제145조, 제167조제3항</u> ----- ----- -----
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27. ~ 64. (생략)	27. ~ 64. (현행과 같음)